

사전 결정서

-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
	전화번호	
	주소	

결정내용

신청내용에 대한 건축법령 등 검토결과	[] 적합	[] 부적합
	부적합 사항	
•		
•		
•		
•		
•		

• 건축위원회심의	[] 적합	[] 부적합 (사유 :)
• 교통영향분석 · 개선대책	[] 적합	[] 부적합 (사유 :)
• 사전환경성검토 협의	[] 적합	[] 부적합 (사유 :)
• 개발행위허가	[] 적합	[] 부적합 (사유 :)
•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	[] 적합	[] 부적합 (사유 :)
• 농지전용허가 · 신고 및 협의	[] 적합	[] 부적합 (사유 :)
• 하천점용허가	[] 적합	[] 부적합 (사유 :)
• 그 밖의 사항			

결정 제 호

「건축법」 제10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결정 되었음을 통지하며, 이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제10조 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직인

유의사항

「건축법」 제10조 제8항	•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,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.
----------------	---